

PART

14

종사자 교육



01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의 실시 기간 및 방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변경**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관련 안내사항 게시 위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예) 20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기간 : 2021.4.1. ~ 12.31.)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대상자 확인(공동인증서 필요)
 - ※ 교육일 현재 퇴직자, 고용보험 미가입 자는 직무교육 불가
- 직무교육 실시
 - 공단이 지정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과 사업주(위탁)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과정(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위탁 교육 계약 후 신청하여 교육 이수
 - ※ 교육전 직무교육기관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비용
 -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따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환급
 - 지원금 외 훈련비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
- 직무교육급여비용
 - 직무교육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청구 게시 공지확인 후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0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 선정기준 및 확인 방법은? 변경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제공 장기요양기관만 해당되며, 공단에서 일정기간을 확인 발체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직무교육 대상자 발체 조건

- 공단에서 정한 일정기간 중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1회 이상)
 - ※ 월 60시간은 지급기준이며, 타 장기요양기관 근무시간은 합산하지 않음
- 2개 이상 기관에 근무하며 월 근무시간이 각 60시간 이상인 경우 아래 순으로 대상자 선정
 - ① 가장 최근에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 기관
 - ② 같은 월에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이 긴 기관
 - ③ 먼저 입사한 기관

※ 공단에서 정한 일정기간

예) 2022년 발체 기준: 2021.1.1. ~ 2021.12.31.

※ 대상자 발체 시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교육일에 소속 장기요양기관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

※ 발체일 기준 해당기관이 폐업 또는 지정취소(폐쇄명령) 되었거나, 퇴직일자 또는 근무종료된 자는 발체대상에서 제외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대상자 확인 (공동인증서 필요)
 - ※ 전산경로: 요양자원/요양보호사 직무교육/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 관리 → 해당 교육년도 설정 후 조회
 - ※ 교육일 현재 퇴직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직무교육 불가

03 직무교육대상자로 발체된 장기요양기관에 고용보험이 미가입되어 있거나 이중가입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는? 변경

- ① 교육대상자로 발체된 장기요양기관에 고용보험이 미가입 상태이며 타 장기요양기관으로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 고용보험이 가입된 장기요양기관에서 공단 지역본부에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 소속기관 변경신청서」 제출
 -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요양보호사직무교육 관련 서식
- ② 교육대상자로 발체된 장기요양기관에 고용보험이 미가입 상태이며 장기요양

기관이 아닌 타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 해당연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불가

- ③ 2개 이상 장기요양기관에 고용보험 이중가입자
 - 고용보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 가능(고용보험 우선순위 및 상실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 고용보험 가입 우선순위에 따라 공단에서 선정한 장기요양기관이 고용보험을 상실하고 타 장기요양기관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할 경우 공단 지역본부에 「요양보호사 직무교육대상자 소속기관 변경신청서」 제출

04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로 조회되는 요양보호사가 현재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 해당연도의 직무교육 대상자로 조회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무교육이수가 가능하며 추후 직무교육급여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가입되어야 함
- 직무교육 대상자 중 이미 퇴직 신고한 요양보호사는 신청자격이 상실되므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직무교육급여비용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교육 이수 후 퇴직(교육 이수일이 퇴직일 이전) 경우 직무교육급여 비용 청구 가능

06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로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기 전에 직무 교육을 이수하면 소급 적용이 되나요? 또한, 해당 연도에 교육 대상자로 조회된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직무교육 실시 기간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실시 기간 종료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변경

- 공단에서 교육 대상자의 조건을 확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게시되기 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2021년도 직무교육 실시일(2021. 4. 1.) 이전에 이수한 경우는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교육 대상자는 정해진 직무교육 실시 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예) 2021년도 직무교육 실시 기간(2021.4.1.~12.31)이 아닌 2022.1.1. 이후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07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급여비용 지급 대상자 기준은? **변경**

- ① 공단이 지정한 직무교육 기관에서 ② 공단이 제공하는 교재로 직무교육 과정을 8시간 이수한 자로서 ③ 직무교육기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훈련서류 보고한 내용(이하 이수자료)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이수내역이 일치하는 요양보호사
 - ※ 장기요양 홈페이지 기관회원서비스 로그인 후 「요양자원/요양보호사직무교육/요양보호사직무교육 대상자 관리」 화면에서 대상자로 조회된 요양보호사 중 교육 이수자
 -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직무교육급여비용 청구 대상자가 아닙니다.
-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요양보호사만 청구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로부터 제공받은 이수 자료에서 누락되었거나, 착오로 입력한 경우에는 청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관할 공단 지역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8 연도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 후 급여비용 청구 시기 및 방법은? **변경**

- 청구관련 공지 위치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종사자교육 혹은 메인화면 ‘종사자교육’ 더보기
- 청구시기
 - 장기요양기관은 교육 이수일자에 따른 회차별 청구시기를 확인 후 청구합니다.
- 청구방법
 - 장기요양 홈페이지 기관회원서비스 로그인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직무교육 / 요양보호사이수내역등록(1단계) / 요양보호사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관리(2단계)
 - 상세방법은 장기요양 홈페이지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메뉴얼 게시’ 공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종사자교육

09 직무교육 이수자의 경우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 한다면 지급액은? **변경**

○ 이수시간에 따른 직무교육 급여비용(2021.1.1.기준)

이수시간(분)	직무교육급여비용
384분 이상 390분 미만	73,680원
390분 이상 420분 미만	80,460원
420분 이상 450분 미만	84,900원
450분 이상 480분 미만	88,810원
480분 이상	95,740원

※ 수가 변경 시 직무교육급여비용 변경 가능

10 만일, 교육신청자격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교육 8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단에서 직무 교육에 따른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공단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인정 이수기준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총 교육시간 중 100분의 80 이상(480분 중 384분 이상)을 출석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직무교육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따라서 교육시간이 100분의 80 미만(384분 미만)이면 교육이수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무교육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1 직무교육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정받기 전에 실시한 직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청구가 가능한지? 하루에 8시간을 전부 이수하지 않고, 며칠에 나누어 이수한 경우 이수일자를 어떻게 입력하여야 하는지? **변경**

- 직무교육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정받기 전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교육을 받은 최종 일자를 교육일자로 입력하여야 하며, 이수시간은 480분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12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을 퇴직한 후 교육을 받은 경우 직무교육
 급여비용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변경**

- 직무교육 실시 전 해당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을 퇴직했다면 직무교육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 직무교육을 이수하였는데 청구가 되지 않는 경우는? **변경**

- 공단은 직무교육기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훈련수료 보고’를 완료한 이수내역을 제공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청구내역과 공단이 제공받은 이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수 내역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청구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청구화면에서 청구불능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직무교육기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수료 보고’된 사실과 이수증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아래의 조치방법에 따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내역미확인’과 ‘이수내역착오입력’의 경우 처리방법

사유	발생 사유	조치 방법
이수 내역 미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이수 자료에 해당 요양보호사가 존재 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증 및 직무교육기관을 통하여 직무교육 이수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교육기관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훈련결과를 미보고 하였거나 교육기관이 지정 전 교육을 실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비용 청구불가 - 직무교육기관에서 훈련수료 보고를 하였으나 이수자 명단에 누락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인력공단에 확인 후 이수내역 반영 후 청구
이수 내역 착오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교육기관의 훈련수료보고 자료와 장기요양기관의 청구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증 및 직무교육기관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기관에서 잘못 입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관리」 화면에서 삭제 후 「대상자 조회 및 이수내역 입력」 화면에서 재입력 - 직무교육기관이 훈련수료보고를 잘못 신고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인력공단에 정정신고 ⇨ 이수증 및 ‘훈련결과조회’ 등 정정확인 자료 팩스 전송

- 상기와 같이 착오입력건 정정입력, 직무교육기관 등에 확인을 하였으나 청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경우,
 - 표지 작성(기관명, 기관기호, 담당자명, 연락처), ①HRD-Net ‘출석부 조회’

화면(캡처) 출력본(직무교육기관에 요청)과 ②해당 요양보호사의 이수증을 공단 지역본부 담당부서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청구 가능 여부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그 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청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공단 지역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구비할 서류는? 교육 이수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명세표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 계좌 입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입출금 내역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명세표에 요양보호사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을 이수한 자가 퇴직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명세표에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계좌이체 등을 통해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15 고용보험 환급과정 등의 사유로 공단이 발췌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타 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청구가 가능한가요? **변경**

- Q3을 참고하여 교육 실시 전, 장기요양기관을 변경 처리한 후 교육을 이수해야하나, 부득이 공단에서 발췌한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타 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 실시 후 직무교육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청구가능 여부를 공단 지역본부와 확인하고 「요양보호사 직무교육대상자 소속기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요양보호사직무교육 관련 서식

16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 접수는 어디에 하는지?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변경**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요양보호사직무교육 관련 서식

- ① 신분증
 -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1부
 - 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1부, 대리인 신분증 1부, 위임장 1부
- ② 교육기관 지정서 또는 신고증 1부
- ③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결과 또는 훈련과정 인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④ 강사요원 현황(붙임서식) 및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 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이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에 따라 강사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7

직무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 훈련과정의 심사, 승인, 인정 등 업무처리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변경**

- 사업주위탁교육 훈련과정의 심사, 훈련과정 인정, 교육실시신고, 수료보고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아래 관련기관 등에 문의 및 확인 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HRD-Net, 고용센터 등

문의사항	문의처
통합심사 신청방법 및 기준 등 심사관련 사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집체훈련심사센터 (1644-5113)
사업주훈련과정 인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수료자 확정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HRD-Net 전산 관련 사항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
기업규모 결정(우선지원 대상기업 등), 보험료 부과	근로복지공단(1588-0075)
훈련과정 지도·점검, 행정처분	관할고용센터(1350)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사업주위탁교육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어 훈련과정에 대하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불인정 받거나, 직무교육 관련 세부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직무교육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8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 시 최근 1년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인력 및 요양보호사 직무능력 향상 관련 교육실적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변경**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인력 실적이 있는 요양보호사양성교육원의 경우 공단지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교육기관에서의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교육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관할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관련 교육실적은 교육기관이 최근 1년 중에 실시한 교육의 HRD-Net ‘훈련결과조회’ 화면(캡처) 출력본 1부를 관할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최근 1년간 실적은 지정신청서 제출일이 기준입니다.
- 자격시험 응시인력 실적이나 직무능력향상 관련 교육실적 중 하나 이상의 실적만 확인되면 지정신청이 가능합니다.

19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 시 강사인력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변경**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이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제4조 ②항-2(가~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 강사인력 자격요건의 항목별 세부 안내
 - 가. 1급 사회복지사로서 노인복지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나.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복지용구 제외)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학사학위 이상인 자
 - 라. 의사(한의사), 간호사 및 물리(작업)치료사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노인 복지학, 간호학 및 물리(작업)치료학을 강의하는 자 또는 최근 3년 이내 강의 이력이

있는 자

바. 장기요양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공단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

20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이 소재지, 강사요원 등 변경 및 폐지·휴업된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요? 강사 1명이 교육 일에 8시간 전 과정 교육을 실시하여도 되나요? **변경**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의 소재지 등 변경사항 및 강사요원 중 공단 지정 후 신규 계약 및 해지된 강사가 있을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변경신고서」를 관할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제출합니다.
※ 공단에 신고된 강사요원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직무교육 실시 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폐지·휴업된 경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폐지·휴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요양보호사직무교육 관련 서식
- 직무교육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일에는 강사 2명이상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1

공단이 제공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는 어디에서 확인하며, 교재 과목 등 교육기관에서 임의로 일부 수정 등 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는 장기요양 홈페이지 / 알림방 / 알림·자료실 / 종사자 교육에 연도별 직무교육 실시 안내 시 붙임 자료로 공지하고 있으며, 매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교육기관 통합심사(상·하반기) 공고 시점에 맞추어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재와 과목으로만 교육이 가능하며 교육기관에서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한 경우, 직무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

직무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반드시 병행하여 실시를 해야 하는지? 1일이 아닌 2일 이상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변경**

- 2020년 직무교육부터 실기교육이 2시간 배정 되었으며, 반드시 교재 교과목 편성시간에 맞춰 이론과 실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2일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사전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3

공단으로부터 지정 받은 직무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나요? **변경**

- [세부사항 제4조 ⑩항 1~6] 직무교육기관 지정취소
 1. 직무교육기관이 ④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다르게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직무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교육 기관으로 지정 받거나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3.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이 취소·폐지되었거나 관련기관의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휴업기간을 포함)에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교육기관이 공단 직원의 직무교육 참관을 방해하거나 직무교육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6. 직무교육기관이 폐지·휴업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폐지·휴업신고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4

코로나19 상황에서 직무교육기관 교육장에서만 교육이 가능한가요? **신규**

- 세부사항 제4조④항에 따라 직무교육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인정된 교육장소(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해야하며, 출장교육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코로나19대응, 집체훈련의 원격 대체 보완지침[사업주](20.8월)’에 따라,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쌍방향훈련 방식(Zoom, Skype 등 온라인 플랫폼)의 교육도 직무교육으로 한시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무교육기관에서 쌍방향훈련 방식(Zoom, Skype 등)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 방식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직무교육기관에서는 쌍방향훈련 방식(Zoom, Skype 등) 실시 전,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직무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쌍방향훈련 방식(Zoom, Skype 등) 시행시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보완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20. 8. 25.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입니다.

25

장기요양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비용 지급할 경우, 공제해야 하는 금액이 있나요? **신규**

- 직무교육 급여비용은 교육이수시간을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는 급여비용의 일환이므로,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동일한 기준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 ※ 사회보험료, 퇴직급여 총당금 등

01 치매전문교육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치매전문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치매전담형 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에 소속된 종사자입니다.
 -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교육신청 가능
- 교육과정(방문요양, 시설, 프로그램관리자)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요양/시설 과정: 요양보호사 등
 -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02 치매전문교육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신청은 교육공고문의 신청일자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포털을 통해 기관에서 직접 신청하며, 교육생 개별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장기요양 홈페이지 기관 공인인증 로그인 후 '요양자원 - 치매전문교육 - 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 / 수정' 화면에서 신청
 - 접수내용 : 교육과정·장소·대상 선택, 휴대폰 입력, 개인정보 활용 동의 확인 후 저장
 - ※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교육공고 첨부파일 "치매전문교육 신청 전산매뉴얼" 참조

03 치매전문교육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치매전문교육은 방문요양, 시설, 프로그램 관리자 과정으로 구분합니다.
 - 방문요양과정: 기본과목(23차시) + 방문요양 과목(10차시) + 실습 및 시험(7시간)
 - 시설과정: 기본과목(23차시) + 시설과목(10차시) + 실습 및 시험(7시간)
 - 프로그램관리자과목: 이론(5차시) + 실습 및 시험(4시간)

- 수료한 교육과정(방문요양 또는 시설)과 상이한 급여제공은 불가능하므로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는 방문요양과정을, 주·야간보호 및 치매 전담형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는 시설과정을 각각 수강해야 합니다.

종사유형		필수 이수 교육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방문요양과정(40차시) : 기본과목 23차시 + 방문요양과목 10차시 + 실습시험 7시간
	주·야간보호	시설과정(40차시) : 기본과목 23차시 + 시설과목 10차시 + 실습시험 7시간
	치매전담형	시설과정(40차시) : 기본과목 23차시 + 시설과목 10차시 + 실습시험 7시간
프로그램 관리자	방문요양	방문요양과정 + 프로그램관리자과목 9시간(프로그램관리자과목 5차시+실습시험 4시간)
	주·야간보호	시설과정 + 프로그램관리자과목 9시간(프로그램관리자과목 5차시+실습시험 4시간)
	치매전담형	시설과정 + 프로그램관리자과목 9시간(프로그램관리자과목 5차시+실습시험 4시간)

04 치매전문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변경

- 온라인 치매전문교육은 이론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습 및 시험은 집합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교육은 스마트러닝 학습사이트(<http://dt.nhis.or.kr>)에서 수강하고 집합교육은 공단 치매전문교육장에서 실시합니다. 교육일시 및 장소는 교육신청 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의 교육세부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세부일정의 교육과정, 교육정원, 교육장소 등을 확인 후 교육신청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05 치매전문교육 공고문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 홈페이지의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장별 세부 일정 및 교육 신청 전산매뉴얼을 첨부파일 형태로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공고문은 교육기간, 교육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교육비 수납 등 교육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06 치매전문교육 합격자 발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변경

- 치매전문교육 시험 합격자 발표는 월 2회 이루어지며, 교육 신청 시에 입력 한 교육생의 휴대폰 번호로 합격여부 확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문자에 안내된 스마트러닝 학습사이트(<http://dt.nhis.or.kr>)에 접속한 후 ‘시험관리’화면에서 합격 및 불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이면 수료증 출

력가능하며 불합격인 경우 재시험 일정을 바로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재시험 신청은 결과 발표일로부터 4일(주말, 공휴일 포함)이내에만 가능합니다.

07 치매전문교육 합격 후 수료증은 어떻게 출력하나요? **변경**

- 교육수료 연도 내 수료증 발급은 스마트e러닝 학습사이트(<http://dt.nhis.or.kr>)에서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교육수료 연도 이후 수료증 발급은 교육생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출력이 가능하며, 장기요양 홈페이지 → 종사자마당 → 치매전문교육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확인 후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8 치매전문교육 교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 교육비는 온라인교육 차시 또는 실습·시험 시간 당 1,000원을 부담합니다.
 - 방문요양과정 및 시설과정(33차시, 7시간): 40,000원
 - 방문요양과정 수료자가 시설과정 신청 시(10차시, 4시간): 14,000원
 - 시설과정 수료자가 방문요양과정 신청 시(10차시, 4시간): 14,000원
 - 프로그램관리자과목(5차시, 4시간): 9,000원
- 방문요양 및 시설과정의 교육비는 기본과목(23차시, 23,000원), 방문요양과목 또는 시설과목(10차시, 10,000원)과 실습·시험(7시간, 7,000원)을 포함해 40,000원입니다.
 - 교육생이 방문요양과정을 수료 한 후 시설과정을 신청하거나, 시설과정을 수료한 후 방문요양과정을 신청한 경우 기본과목(23차시)을 제외한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목(10차시, 10,000원)과 실습·시험(4시간, 4,000원)에 대한 교육비 14,00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09 치매전문교육 교육비 환불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학습기간 종료 후 온라인교육 진도율 0%인 교육생에 한하여 환불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교육 일부 수강자 또는 실습·시험 미출석자의 경우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학습기간 중에는 환불신청 불가함

- 환불신청은 해당 장기요양기관 관할 운영센터에 내방,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환불금액 지급시기: 환불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소요
 - 제출서류: 환불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 교육비 환불은 교육생 계좌 환불 원칙으로 교육생 명의 통장사본 제출

10 치매전문교육 참석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 온라인 교육은 근무시간으로 불인정하고 집합 교육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만 월 기준 근무시간을 적용 받지 않는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는 집합 교육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단에서 주관하는 장기요양 직무 관련 교육에 참석할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1 치매전문교육 교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신규

- 온라인 교재는 학습사이트에서 PDF 파일로 제공되고 있으며 다운로드 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습 교재는 교육장에서 제공합니다.

12 치매전문교육 수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

- 아래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수료가 인정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료가 불인정됩니다.
 - ※ 1. 온라인교육 100% 이수(진도율 100% + 설문완료)
 - 2. 실습 100% 출석
 - 3. 시험 점수 60점 이상

13 치매전문교육 신청 후 전화번호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신규

- 치매전문교육 신청기간에는 장기요양기관이 업무포털(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수정 가능하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공단에 유선으로 수정 요청하거나 온라인 학습사이트 내 '회원정보수정'화면에서 개별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14 치매전문교육 일정을 변경할 수 있나요? **신규**

- 교육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증빙자료 확인 후 일정변경 가능합니다.
 1. 본인(배우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및 응급상황
 2. 본인의 응급상황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본인 사고,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
 4. 국가, 공공기관 등의 참석 및 출두 요청이 발생한 경우
 - ※ 해당 요청에 대한 연기가 가능한 경우 변경 불가
 5. 교육일 현재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교육생의 참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단이 판단한 경우
- 일정변경 신청방법
 - 해당 사유 발생 시 당일 교육종료 전 신청(교육종료 후 신청은 불인정)
 - 관할 지역본부에 '치매전문교육 일정변경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